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시간제근무 대체인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8.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I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고용형태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 예정지	담당업무	비고
기간제 근로자	직업상담원 시간제 근무 대체인력	1명	서울남부고용센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 또는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고용센터 업무지원	직무설명서 (붙임1 참조)

II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	· 무관
학력·전공·성별	· 무관
연령	· 제한 없음
기타	· 채용 즉시 근무 가능 자 ·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Ⅶ 기타유의사항 결격사유 참고]

III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 전형	면접 전형
▲ 응시자의 직무 적합성 여부 심사 ▲ 서류전형 기준,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의 3~5배수 이내 선발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6.8.13.(목)~8.20(목) (18시까지 접수)	①입사지원서, ②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③자기소개서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 입력 제출) ③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붙임3> 서식 → 자필 서명한 스캔본을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에 첨부하여 제출 - 접수방법: e-채용마당 온라인 입사지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수신된 지원서만 유효) ※ 우편, 방문 제출 등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8.25.(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면접전형	‘26.8.27.(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 적격자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6.8.28.(금)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채용(예정)	‘26.9.1.(월)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서울남부지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직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IV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서류전형>	○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경력사항 <서류전형>	○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가점부여 <서류 및 면접전형>		
	가점항목	가점 부여 내용
	법정가점 (법률상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10점) 또는 5%(5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가점항목	가점 부여 내용
사회형평 가점	○ 「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지침」에 따라 해당 지원자에게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3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사회형평 가점 포함시)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있는 경우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① 법정 가점을 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② 사회형평 가점을 받은 자, ③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 준고령자 순, ④ 서류 및 면접전형 합산점수가 높은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V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 접수**하고 **증빙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제출 서류	비고
• 입사지원서, 경험 혹은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원서접수시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 •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등록증 등의 증빙자료 •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확인 서류 각 1부(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VI 근무조건

- 채용예정일: '26. 9. 1.(화)
 - * 근무기간: '26. 9. 1.(화)~'27. 1. 10.(일)
(직업상담원 시간제 근무기간 변경 시 대체 근로자 근무 기간 변경될 수 있음)
- 보수수준: 월 1,053,150원
 - * 정액급식비(16만원) 별도, 그 밖의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 4대 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4시간(13:30~18:00, 휴게시간 30분 포함)
- 근무 장소: 서울남부고용센터
- 주요 업무: 고용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지원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

VII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 청구 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을 기피중에 있는 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남부지청 고용관리과(☎02-2639-21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